

# 2025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 위기임산부 및 영아지원 [모아(母兒)성장지원사업] 안내문

## I 사업 개요

### 1. 사업 목적

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안정적 양육지원으로 태아와 영아의 생명 보호 및 가족 해체 예방을 목표로 함.

### 2. 지원 대상

■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 및 36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(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)

임신 중	분만 후 6개월 미만	36개월 이하	경제적 지원기준
위기임산부		위기영아	중위소득 100% 이하
위기임부	위기산부		

■ 우선 지원 기준

- 경제·심리·신체·사회적 어려움으로 태아 및 영아의 생명권과 발달권이 침해되어 **긴급한** 지원이 필요한 경우
- 임산부 및 영아 양육 가정이 공공 지원제도의 **사각지대**에 놓여 있는 경우

### 3. 지원 내용

지원항목	세부 내용	지원금액
긴급지원	출산용품비, 양육물품비, 임시 주거 및 생계지원 등 위기임산부 및 영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내용 지원	최대 150만원

## II 사업 진행 과정

### 1. 진행 일정

1단계	사례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기 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수시 접수</li> </ul>
▼		
2단계	대상자 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접수 후 2주 안에 선정 결과 안내</li> </ul>
▼		
3단계	후원금 지급 및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후원금 사용 계획에 따라 후원금 지급</li> </ul>
▼		
4단계	결과보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 완료 후 1달 이내</li> </ul>

## 2. 접수

- 1) 신청 주체: 기관만 신청 가능(경기지역본부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등)
- 2) 접수 방법: 기관 이메일 공문 제출([kwf38@childfund.or.kr](mailto:kwf38@childfund.or.kr))
- 3) 접수 문의: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복지사업팀 (T.031-234-2352, 내선 1번)

### III

## 신청 서류

### 1. 필수 서류

- 1) 지원 신청서 1부
- 2) 개인정보 처리 및 초상권 이용 동의서 1부
- 3) 주민등록등본 1부
- 4) 소득증빙서류 1부

구분	증명서	발급기관
<b>법정 저소득층 가구</b> * ①~⑤ 중 선택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② 한부모가족 증명서 ③ 자활근로자 확인서 ④ 차상위계층 확인서 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	• 주민자치센터 • 시·군·구청 민원실 • 정부24(인터넷)
<b>기준 중위소득 100% 가구</b> * ①~② 중 선택	①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(가구원 소득자 모두) ②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제출이 어려울시,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서, 급여내역서 등	• 국민건강보험공단 (1577-1000) - 전화/방문/인터넷 • 무인발급기
<b>이주배경 가구</b> * ①은 필수 제출, ②~④ 중 1개 이상 제출	① 여권(기관 만료 여권 포함)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담당 사회복지사(의료사회복지사 등)의 상담소견서, 혹은 관련기관 소견서(희년의료공제회,이주민지원센터 등) ③ 근로확인서, 급여가 입금된 기록이 있는 통장사본, ④ 근로계약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• 의료 및 복지기관 등

- 5) 임신확인서 1부(신청자가 현재 임신중인 경우 제출하며, 산부인과에서 발급 가능함.)

### 2. 지원 신청시 유의사항

- 신청서류는 제출기한 기준 **3개월 이내 서류**만 인정함. 단, 제출이 어려운 사유가 있을 시 사전 논의 필수
-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 서류에는 생년월일만 표시. (**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거 필수**)
- 지원 결정 시, 공문을 통해 선정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및 결과보고 관련하여 구체적 안내 예정임.
- 1가정당 1회만 지원 가능함. 단, 추가 지원 필요시 담당자 논의 후 타자원 연계 가능.

### 1. 후원금 지원 중단 및 반납

-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원금 지원결정 취소, 후원금 지원 중단 및 반납이 진행될 수 있음.
  - 타 기관으로부터 본 사업과 비슷한 성격의 후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
  - 본 사업의 접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
  - 서류의 허위기재, 변조, 위조, 기타 부정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
  - 지원 대상자가 3개월 이상 연락두절된 경우
  - 후원금 사용에 있어 허위/과다 청구 및 후원금 지원 사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
  - 대상자가 지원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
  - 사전 논의 없이 증빙서류 제출 서류를 2달 이상 제출하지 않는 경우
  - 기타 사정(보호자의 구속 및 수감, 아동의 시설 보호 등)으로 후원금 지급 및 관리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

### 2. 문의

-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복지사업팀 (T.031-234-2352, 내선 1번)